

●서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6-30호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를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발송한 서류가 반송된 사유(주소 불명확)로 출항정지명령서를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시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서해어업관리단장

공 시 송 달 공 고

|                                                |                             |     |                         |     |           |     |              |
|------------------------------------------------|-----------------------------|-----|-------------------------|-----|-----------|-----|--------------|
| 예<br>정<br>된<br>처<br>분<br>의<br>제<br>목           | 어선법 위반 어선(마이**호) 출항정지명령 통지  |     |                         |     |           |     |              |
| 당사자                                            | 성명(어선)                      |     | 김*민(마이**호/1108003*****) |     |           |     |              |
|                                                | 선적항                         |     | 경기 화성시 서신면              |     |           |     |              |
| 처<br>분<br>의<br>원<br>인<br>이<br>되<br>는<br>사<br>실 | 지정된 정기검사( ‘26.8.14.) 미수검    |     |                         |     |           |     |              |
| 처<br>분<br>하<br>고<br>자<br>하<br>는<br>내<br>용      | 출항정지                        |     |                         |     |           |     |              |
| 법<br>적<br>근<br>거<br>및<br>조<br>문<br>내<br>용      | 「어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                         |     |           |     |              |
| 의<br>견<br>제<br>출<br>기<br>관                     | 제출처                         | 기관명 | 서해어업<br>관리단             | 부서명 | 어업<br>지도과 | 담당자 | 장권율          |
|                                                |                             | 주소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     |           | 전화  | 061-240-7992 |
|                                                |                             | 메일  | rnjsdbf1238@korea.kr    |     |           | 팩스  | 042-870-1753 |
|                                                | 제출기한                        |     | 2026년 9월 25일까지          |     |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